

최근의 국내 언론관계 판결

*편집자 주 · 사건관계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인의 이름, 소속회사, 주소, 차량번호 등을 비실명·익명처리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판결문문의 일부를 수정 또는 삭제함을 알려드립니다.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경우,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서울중앙지법 2007. 6. 27. 자 판결(2006가합70429)

사실개요

서울중앙지법 제25민사부(재판장 한창호 부장판사)는 금○○ ‘시사저널’ 발행인 겸 편집인(이하 원고)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의 편집장 고○○와 편집인 이○,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임대표였던 최○○, 한국기자협회장 정○○(이하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가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있는 시사저널에서 기사삭제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시사저널 경영진의 기사삭제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사, 논평, 성명을 보도하거나 발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기사를 삭제한 것은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이 사건 기사

등에는 ‘①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통적으로 적시하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삭제 지시가 편집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사 등은 시사저널에서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이의 편집권 침해 여부의 논란을 다룬 것으로서 그 공공성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 “원고는 편집국장 이△△이 원고의 기사 삭제 권유 또는 지시에 불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

인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편집인의 자격으로 시사저널 회장 등과의 간부회의를 열면서 더 이상 이△△에게는 회의 개최 사실 및 그 후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이 직접 인쇄소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편집국장이 이미 기사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간부회의에 참여시키는 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과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정상적인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편집국장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원고의 이러한 기사 삭제 지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 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대해서 역시 “원고의 이력 및 그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고위층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정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친분이 두텁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기사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인 것처럼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피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

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원고가 이△△에게 기사 삭제를 권유 또는 지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위 기사로 인한 ○○그룹 관계자들의 명예훼손보다는 자신의 ○○ 고위층과의 친분관계였으며, 당시까지 원고는 자신이 삭제를 권유하던 기사를 본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과 간부회의를 통한 기사 삭제지시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를 직접 겪은 시사저널의 기자들과 그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 결 문

사 건 : 2006가합70429 손해배상(기)
원 고 : 금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이 상 준, 이 현 지

Ⅲ 고 : 1. 고 ○○
2. 이 ○
3. 한겨레신문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공덕동 116-25
대표이사 정태기
4. 최 ○○
5. 정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 결
담당변호사 문 건 영

변 론 종 결 : 2007. 6. 13.

판 결 선 고 : 2007. 6. 27.

주 문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 원고에게, 피고 고○○, 이○, 한겨레신문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150,000,000원, 피고 최○○, 정○○은 각 1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독립신문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고, 피고 고○○, 피고 이○○은 피고 한겨레신문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주간지 '한겨레21'의 편집장과 편집인이고, 피고 최○○은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상임대표이었고, 피고 정○○은 한국기자협회의 회장이다.

나.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싼 분쟁의 발생

(1) 시사저널의 이□□ 기자가 2006. 6.경 작성한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그 게재를 강행하려는 편집국장 이△△과 이를 막으려는 원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가 시사저널의 발행 및 편집의 최종책임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인쇄소에 위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기사의 게재를 막았다.

(2) 이△△은 위 사건에 대한 항의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표는 시사저널의 경영진에 의해 바로 수리되었다. 이에 시사저널 소속 기자들이 편집권 수호를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 이와 관련된 성명을 발표하였고, 그 무렵부터 미디어 오늘, 오마이뉴스 등이 위와 같은 분쟁을 상세하게 보도하기 시작하였다.

다. 이 사건 기사 등의 보도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시사저널에서 발생한 기사삭제를 둘러싼 분쟁이 일부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알려지자, 피고들은 시사저널 경영진의 기사삭제

행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별지 기재 각 기사, 논평, 성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사 등'이라고 한다)을 보도하거나 발표하였다.

(2) 별지 1 내지 3 기재 각 기사, 논평은 2006. 7. 4. 자 및 2006. 7. 14.자 한겨레21에 실린 것이고(별지 1, 3 기재 논평은 피고 고○○가 작성한 것이다), 별지 4 기재 성명은 사단법인 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명의로 2006. 6. 22. 작성되어, 각 언론사의 미디어 및 엔지오 담당기자들에게 보내졌고, 별지 5 기재 성명은 한국기자협회의 명의로 2006. 6. 22. 발표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기자가 작성한 '2인자 이◇◇의 힘 너무 세졌다'라는 제목의 기사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담고 있어 수차례에 걸쳐 이□□ 기자와 편집국장 이△△에게 위 기사의 게재가 부적절함으로 이를 신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양해를 구했으나, 편집국장이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게재를 강행함으로써 부득이 시사저널의 발행 및 편집의 최종책임자인 원고가 시사저널의 회장, 상무, 광고국장과의 경영진 회의를 거쳐 인쇄소에 위 기사의 삭제를 지시함으로써 그 게재를 막은 것이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발행인 겸 편집자로서의 정당한 권한행사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작성하거나 발표한 이 사건 기사 등에는 '①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통적으로 적시하

면서 원고의 위와 같은 기사의 삭제 지시가 편집권의 침해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바, 이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 또는 그 사용자로서 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원고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주장하는 사실 중 위 사실 이외의 부분은 위 사실을 전제로 원고의 행위에 대한 피고들의 평가 또는 의견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기사 등의 일부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의견의 표명이라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거나 묵시적으로라도 어떠한 사실을 전제하고 있고, 그렇게 전제된 사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명예훼손책임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표명된 의견 역시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위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명백한 이상 그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의 성부는 위 사실의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3. 판 단

가.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

(1) 일반론

언론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일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 의 연관 하에서 기사의 객관적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적시된 사실은 시사저널의 발행인 겸 편집인인 원고가 ○○그룹의 고위층과의 두터운 친분관계로 인하여 ○○그룹의 인사에 관하여 비판하는 논조의 기사가 시사저널에 실리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기사를 게재하려던 편집국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인쇄소에 기사삭제를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으로 그 기사의 게재를 막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나. 위법성 조각

(1) 일반론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거가 있거나, 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이 사건의 경우

(가) 공익성

이 사건 기사 등은 시사저널에서 ○○그룹 관련 기사의 게재를 둘러싸고 발생한 언론매체의 발행인 겸 편집인과 편집국장 사이의 편집권 침해 여부의 논란을 다룬 것으로서 그 공공성은 인정된다.

(나) 진실성 및 상당성

1) 이 사건 기사 등의 내용 중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3, 4, 7 내지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1965.경 ○○일보 기자로 시작하여 2002.경까지 약 37년간 ○○일보 사장, 부회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2003. 4.경부터 시사저널 대표이사 및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근무하고 있다. 원래 ○○그룹 계열

사였던 ○○일보는 1999.경 ○○그룹과 계열 분리된 바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고위층과 친분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개인적인 친분은 있으나, 편집인으로서의 관련은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② 시사저널 기자인 이□□은 2006. 6. 15.경 ‘○○그룹 이●●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이 자신의 측근들을 ○○그룹의 주요 보직 또는 계열사 사장에 임명하는 등 독선적인 인사를 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그룹 인사 관련 기사를 작성 중이었다.

③ 원고는 6. 15. 15:00경 ○○그룹 홍보실 관계자로부터 ○○그룹 관련 기사가 작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기사 게재를 재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후 편집국장 이△△을 사장실로 불러 “나와 ○○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기사의 보류 등을 권고하였고, 이△△은 확인해 보고 다음날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당시까지 원고와 이△△은 이□□ 기자가 작성한 위 기사를 읽어보지도 못한 상태였다).

④ 이△△이 6. 16. 오전 사장실로 찾아가 원고에게 위 기사가 기사로서의 요건을 잘 갖추고 있으므로 이 번호에 빼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원고는 “그럴 줄 알았다”면서 화를 내었고, 이에 이△△은 “기사를 내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바로 사장실을 나왔다.

⑤ 원고 등은 6. 16. 저녁 무렵 이△△에게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이△△이 전화를 받지 않아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⑥ 원고는 6. 16. 22:00경 시사저널 회장, 상무, 광고국장 등 4인의 간부회의를 열어 위 기사의 삭제결정하고, 같은 날 24:00경 인쇄소에 직접 전화를 걸어 “제작부서와 이야기가 되었으니 기사를 빼고 광고를 넣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⑦ 당시 위 간부회의가 열린 사장실은 건물 6층에

있었고, 이△△이 근무하는 편집국 사무실은 건물 5층에 있었는데, 위 간부회의 당시 원고 등은 이△△과 전화 통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한 이후에는 5층으로 직접 부르러 가거나 하는 등 별도의 방법으로 5층에 있는 이△△에게 위 간부회의 개최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고, 이△△은 위와 같은 기사 삭제 결정 등을 알지 못한 채 6. 17. 00:30경까지 위 편집국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근하였다.

⑧ 이△△은 위 기사 삭제 사건과 관련하여 그 다음 근무일인 6. 19.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사표는 경영진에 의하여 즉시 수리되었다.

2) 먼저, ‘원고가 편집국장 몰래 해당 기사를 삭제하고, 광고로 대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편집국장 이△△이 원고의 기사 삭제 권유 또는 지시에 불응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후 전화를 받지 않자 편집인의 자격으로 시사저널 회장 등과의 간부회의를 열면서 더 이상 이△△에게는 회의 개최 사실 및 그 후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이 직접 인쇄소에 기사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편집국장이 이미 기사 삭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고는 하나 편집실무책임자인 편집국장을 간부회의에 참여시키지 않는 등 취하지 않은 채 회의를 진행하여 기사 삭제를 결정한 점과 그 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충분히 편집국장 등 정상적인 편집 체계를 통하여 위 결정 내용을 수행하게 할 수 있었음에도 편집국장 등에게 통보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편집인과 편집국장 등과의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언론계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편집인의 문제 해결 방식 또는 편집권의 수행방식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기사 등에서 원고의 이러한 기사 삭제 지시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고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과 관련된 기사내용은 전체적으로 진실에 부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가 ○○일보 출신으로 ○○ 고위층과의 친분이 두터워 ○○그룹 관련 기사의 삭제를 지시하였다’는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 및 그 스스로 이 사건과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고위층과) 개인적인 친분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기사에서 “친분이 두텁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표현의 진실성은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기사 삭제를 지시한 이유가 ○○그룹 고위층과의 친분 때문인 것처럼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를 진실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음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최초 원고가 이△△에게 기사 삭제를 권유 또는 지시하면서 강조한 것은 위 기사로 인한 ○○그룹 관계자들의 명예훼손보다는 자신의 ○○ 고위층과의

친분관계였으며, 당시까지 원고는 자신이 삭제를 권유하던 기사를 본 사실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에서 본 원고의 이력과 간부회의를 통한 기사 삭제지시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태를 직접 겪은 시사저널의 기자들과 그들로부터 이를 전해들은 피고들이 위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기사 등의 내용은 공익성 및 진실성 또는 상당성이 인정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 사 한 창 호
 판 사 노 태 홍
 판 사 최 인 화

